



치매보험금 지급조건 안내문

※ 아래의 조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치매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대상상품
① 치매상태의 정의	'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 또는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질병에 대하여 치매분류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상품 공통 (단, 질병에 대하여 "기질성 치매 분류표", "치매 분류표", "중증치매분류표"에 대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치매 보장개시일	치매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 또는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보장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무배당 치매보장특약 무배당 치매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 치매진단특약II(갱신형) 무배당 신 치매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 AIG실버스타건강보험 무배당 에버스타건강보험 무배당 우리가족 힘이되는 선지급 중신보험II 무배당 우리가족안심치매보험(1형_간편심사형) 무배당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1형_간편심사형) 무배당 중증치매진단특약(1형_간편심사형)
③-1 중증 인지장애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란 한국형간인지기능 [MMSE-K(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orean version), 1989년]의 선별검사 결과가 19 점 이하이고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3점 이상 (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 그 상태가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배당 실속하나로건강보험III(3형_치매추가형) 무배당 우리가족안심치매보험(2형_일반심사형) 무배당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2형_일반심사형)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③-2 중등도 인지장애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2점(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 그 상태가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배당 치매보장특약 무배당 치매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 치매진단특약II(갱신형) 무배당 신 치매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 AIG실버스타건강보험 무배당 에버스타건강보험 무배당 우리가족 힘이되는 선지급 중신보험II 무배당 우리가족안심치매보험(1형_간편심사형) 무배당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1형_간편심사형) 무배당 중증치매진단특약(1형_간편심사형)
③-3 경도 인지장애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1점(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 그 상태가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족안심치매보험(1형_간편심사형) 우리가족안심치매보험(2형_일반심사형) 안심 치매진단특약
④ 치매의 진단조건	치매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 정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피보험자의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최종 진단 확정됩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상품 공통
⑤ 보상하지 않는 치매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전상품 공통



구분	주요 내용	대상상품
③-2 중등도 인지장애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2점(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 그 상태가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배당 우리가족안심치매보험(1형_간편심사형) 무배당 우리가족안심치매보험(2형_일반심사형)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③-3 경도 인지장애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1점(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 그 상태가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족안심치매보험(1형_간편심사형) 우리가족안심치매보험(2형_일반심사형) 안심 치매진단특약
④ 치매의 진단조건	치매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 정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피보험자의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최종 진단 확정됩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상품 공통
⑤ 보상하지 않는 치매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전상품 공통

